제정 1997년 3월 31일 훈령 제112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 개정 2001년 2월 19일 훈령 제154호 개정 2002년 5월 23일 훈령 제163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오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전부개정 2025년 3월 24일 훈령 제328호 (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조에 따른 오산시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다.
- 2. "상황관리"란 오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 4. "전담인력"이란 분장된 업무가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등으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 **제3조(구성)** ① 상황실은 오산시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 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다만, 휴일 및 야간에는 「오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명령자가 발령한 5~6급 공무원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요 간부 및 시·도 상황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5.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 6.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 7.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 · 기관과 긴밀한 협조
-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담인력의 휴가,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 「오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명령자가 발령한 상황근무자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상황근무자는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내지제3항,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2.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2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③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및「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7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 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부시장 및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황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 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작성하는 상황보고
 -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 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시·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시·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 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

- 제10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주요 재난관 런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 제12조(문서 및 장비 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제13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 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 제15조(결원보충) 시장은 상황실 근무 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 제16조(현업공무원 지정 등) ① 시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무 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야간 및 휴일 근무자의 휴무)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이 아닌 당직명 령자가 발령한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오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 7조에 따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당)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이 아닌 당직명령자가 발령한 상황근무 자에게는 「오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한 당직 근무자 수당을 준용한다.

부칙〈2025. 3. 24 훈령 제328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제6조제4항 관련)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 2. 준수사항
 - o 지정 근무시간 2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상황근무자는 2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근무 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정
- 3. 보고서 작성기준
 - 정기: 재난안전 일일상황 보고서(08시 기준) 작성
 - ㅇ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 4. 상황보고 및 전파
 - 시장, 부시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보고·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 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6. 중앙행정기관, 시·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기보고서



재난상황보고

0000. 00. 00.(요일)				
재난	상황설	실장	000 (20000)	
巾	무	자	000 (20000)	

	h고 말생 모고 					
 □ 상황개요 ○ 일 시: 0000. 0. 00.(일) (○ 위 치: 오산시 ○○동 0 ○ 내 용: (예시) 00빌라 00층 						
□ 피해상황 ○ 인명피해: 00명(사망 0명, 중	상 0명, 경상 0명) 피해자 인적사항 등 사손, 건물 전소 또는 일부 소실 등					
	경찰 00명, 공무원 00명) 경찰차 00, 성남시 00)					
 조치사항 ○ 00:00: 사고 접수 ○ 00:00: 소방 등 유관기관 현장 도착 ○ 00:00: 00부서 담당자 000 등 00명 현장 출동 ○ 00:00: 현장 상황 종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지 제2호서식] 수시보고서

재난상황 보고서

0000.00.00. ○○시 재난안전상황실장: ○○○☎000-000-0000 상황근무자: ○○○☎0000

제목: (예시) 오산시 ○○동 ○○공장 화재발생 상황보고

- 1. 일시: 0000. 00. 00. 00:00(재난 발생일시)
- 2. 장소 : ○○시 ○○구 ○○로 ○○번길 ○○공장 *(구체적인 장소)*
- 3. 상황 개요: (예시) 금일 9:50경 ○○시 ○○동 ○○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4.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 나. 재산피해:
 - 다. 그 밖의 피해
- 5. 동원사항
 - 가.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나. 장비: 대()
- 6. 조치사항
 - 가. 상황전파: 00담당부서, 00담당기관
 - 나. 현장파견: 00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00명
 - 다. 재난문자방송: 0.0. 00:00경 1차 송출. 0.0. 00:00경 2차 송출.
 - 라. 인명대피: 0.0. 00:00경 00명 주민대피(대피장소: 000)
 - 마. 시간대별 조치사항
 - 00:00: 최초 신고 접수
 - 00:00: 00부서(유관기관) 출동 중
 - 00:00: 00부서(유관기관) 현장도착 및 조치 중
- 7. 지원 및 협조사항

_

_

8. 향후 전망 및 대책

_

작성 방법

- 1. 사망자 실종자 인적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2.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오산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	---	---	---	----	--	--

1. 근무자

즈가	소속:	직급:	성명:	- 0:구나	소속:	직급:	성명:
十亿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2. 기상특보 발령현황

○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령한 특보

3. 중점 관리사항

○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주관에서 지시한 중점 관리사항

4. 주요 상황 처리현황

일시		발신기관	비기스티	LII O
접수	보고(전파)	수신기관	보고수단	내용
00:00	00:00	00구 재난안전상황실	휴대전화 NDMS PS-LTE	_
				_
				_
				_
				_
				_

5. 기타(주요 언론사항 등)

○ TV, 인터넷뉴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